

보증(담보)공탁금 회수 절차

1. 부동산가압류신청

정부수입인지 10,000원(민사소송등인지법 제9조 제2항, 2011.10.19.시행)

2. 담보제공명령

3. (현금)공탁

4. 가압류인용결정

5. 담보취소신청(현금공탁한 경우)

민사소송법 제125조 제2항에 따른 담보취소신청(카담사건)
인지 1,000원, 송달료(2회분) 12,240원
담보취소신청서, 동의서, 즉시항고권포기서, 인감증명서 2통, 공탁서 사본

6. 담보취소결정(10일 정도 소요)

7. 담보취소결정 확정증명원 발급

8. 공탁금회수

공탁금회수 청구서 2통, 담보취소결정정본 및 확정증명원
공탁서사본 1), 위임장(위임인의 인감 날인), 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

1) 회수(출급) 청구하는 공탁금액이 5000만원 이하인 경우 공탁서(공탁통지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 다만, 청구인이 관공서이거나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인 때에는 그 금액이 1000만원 이하(공탁규칙 제33조, 제34조)

보증(담보)공탁금 회수시 구비서류

1. 공탁금회수청구서 2통

2. 담보취소결정정본, 확정증명원

3. 공탁서 원본(사본) 2) 3)

4. 공탁자의 인감증명서(직접 회수시) 4) 5)

5. 공탁자 신분증(직접 회수시), 주민등록표초본

- 공탁자의 주소가 공탁당시와 다른 경우에 변경된 주민등록표초본 첨부

6. 대리인이 올 경우 이

- 공탁자의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 본인의 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과 도장

-
- 2) 출급(회수) 청구하는 공탁금액이 5000만원 이하인 경우 공탁통지서(공탁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 다만, 청구인이 관공서이거나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인 때에는 그 금액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공탁규칙 제33조, 제34조)
 - 3) 공탁물 출급(회수)청구서에 공탁통지서(공탁서)를 첨부할 수 없는 때에는, 공탁관이 인정하는 2명 이상이 연대하여 그 사건에 관하여 손해가 생기는 때에는 이를 배상한다는 자필서명한 보증서와 그 재산증명서(등기부등본 등) 및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공탁규칙 제41조 제1항).
 - 4) 공탁금 출급(회수)청구서에 본인의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공탁금을 직접 출급(회수)청구하는 경우로써, 그 금액이 1000만원 이하이고, 공탁관이 신분에 관한 증명서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공탁규칙 제37조).
 - 5) ① 공탁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법인등기부등본),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일 경우에는 정관이나 규약과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회의록 또는 대표자선임결의서)을 공탁서에 첨부하여야 한다(공탁규칙 제21조 제1항), ② 출급·회수청구인이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인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에 그 사실을 확인하는데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2명 이상의 성년인 사람이 사실과 같다는 뜻과 성명을 적고 자필서명한 다음,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공탁규칙 제38조), 공탁규칙 제21조 제1항은 공탁물 출급·회수청구에 준용된다(공탁규칙 제38조 제1항).
 - 6) 위임에 따른 대리인의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에 찍힌 인감에 관하여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즉 위임장에 본인의 인감을 찍고 그 인감에 관한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함.